

* 지금까지 발전된 일본군문서에서 나타나 있는 군위안부 정책의 입안, 수행의 명령 계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. (吉見교수 논문 참조)

위안부 징집

1. 천황 → 참모총장 → 각 파견군의 최고지도부 → 군
육군대신 사단 }의 후방참모
여단 (예: 군사령관)
연대
- 점령지의 총장, 유력자 ← 헌병 ← 군포는 재외공관의 허가서
2. 천황 → 참모총장 → 각 파견군 → 업자 → 조선, 대만, 일본의 헌병, 경찰
육군대신 } 과 연휴 또는 지원받음
- 사단
여단
연대
(조선군사령부)
(대만군사령부)
- 전쟁

통제, 지도

육군성 - 병무국, 병무과, 의무국위생과, 인사국은상과, 건설과,
대본영육군부병참총감부수품본창

해군 - 해군대신이 총괄했다고 보여짐

육군보다 중앙집권적

대만총독부, 조선총독부 - 총독부에서 징집에 참여한 것이 확실

* 앞의 표에 기초하며, 정대협에서 고발할 사람들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.

1. 上限

문서상으로 나타난 확실한 인물까지 : 육군대신, 해군대신(참모총장과 천황은 명백한 문서자료가 발굴될 때까지 보류할 것임)

2. 중간단계

각 명령단계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인물.

예 ; ㉔ 각 파견군(조선군, 대만군, 관동군, 지나파견군, 남방군) 사령관, 이하 명령을 수행한 중간단계 군인, 헌병들

- ㉠ 육군성부관, 병무국, 의무국, 인사국의 국장들
병무과, 위생과, 은상과, 건설과의 과장들
이하 명령을 수행한 중간단계 군인, 헌병들
- ㉡ 해군성의 각 국장, 과장
- ㉢ 대만 총독, 조선총독, 이하 해당 관리들
- ㉣ 사기적 방법으로 위안부를 모집한 민간업자들

3. 下限

- 위안소 설립, 통제에 관한 명령을 수행한 군인, 헌병들(군위안소를 사용하는데 그친 군인, 헌병들은 제외)
- 군위안부 모집인줄 모르고 징집에 협력한 총독부 말단 관리들은 제외,
- 군위안부 모집인줄 모르고 징집에 협력한 민간인은 제외.